

연구 자료

OECD 가입과 한국 농업

윤 호 섭*

1. 머리말
2. OECD 개요
3. OECD/농업위원회의 주요 활동
4. OECD/농업규범
5. OECD 가입이 한국 농업에 주는 영향
6. 맺는말

1. 머리말

우리 정부는 1995년 3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는 우리 나라를 회원국으로 초청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OECD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입 심사는 재정, 금융, 보험, 해운, 환경,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7개 분야를 중심으로 OECD와 관련부처간에 진행되었다. 농업분야는 OECD 측과 1995년 11월 한국 농업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가입 절차는 끝났으며,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관심이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OECD에 대한 이해가 확산될수록 농업분야의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 남은 조차란 가입에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한 후 프랑스 정부에 가입문서를 기탁하는 일뿐이다. OECD 가입이 확정적인 현시점에서 OECD 내에서의 활동에 대비한 각종 준비와 활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OECD와 관련된 농업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OECD와 관련된 연구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OECD와 OECD의 농업위원회 및 OECD의 농업관련 규범을 살펴보고, OECD 가입의 의미를 농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OECD 개요

OECD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하여 발족된 OEEC(Organization

* 연구위원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유럽경제협력기구)를 모체로 1961년 창설된 선진국 간 경제협력 및 정책협의를 하는 국제기구이다. 설립 당시의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등 서유럽의 18개국과 미국 및 캐나다를 합쳐 20개국이었다. 그 후 일본이 1964년에, 핀란드가 1969년, 호주가 1971년, 그리고 뉴질랜드가 1973년 가입하였다. 멕시코가 1994년에 회원국으로 합류하였으며,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우리 나라가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초청을 받았다.

OECD의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자유무역의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즉, 회원국의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비회원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 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확대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첫째, 개별 또는 공동으로 자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둘째, 자국의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연구를 장려하며,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셋째, 경제성장과 국내 및 대외적인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국 또는 타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넷째, 상품의 교환, 경제적 지불에 대한 장애를 경감 또는 제거하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다섯째, 기술원조의 수용 및 수출시장의 확대가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경제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할 것 등에 동의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그리고 정책협약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업무수행은 첫째, 모든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둘째,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고 셋째, 어떠한 결정도 그 회원국의 헌법상의 필요 요건을 마칠 때까지 구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ECD의 업무수행은 신사협정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을 특징으로 하며, 자율적인 전원 의견일치 방식 즉, 만장일치를 택하고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규정을 유보할 수 있다.

OECD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 이사회가 있다. 각료이사회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OECD 활동에 관한 내용 검토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정책지침을 토의한다. 상주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각료이사회 기능을 대리하며, 빈번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이사회는 OECD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나 특별기관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 주제를 할당하며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OECD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고, 일반 위원회의 보고서 및 제안 등을 이사회에 제

출하기에 앞서 토의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별집행위원회는 국제통화제도 및 무역자유화 등 국제경제의 주요 문제를 특별히 검토하기 위하여 1972년 구성되었으며, 그 이후 경제정책과 무역 및 남북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여 왔다.

OECD의 활동영역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며, 이러한 활동은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실질적인 토의를 하는 분야별 위원회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환경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26개가 있고, 각 위원회 산하에 200여개의 실무작업반 및 전문가 그룹이 하부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은 이사회와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사무총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다. 사무총장은 상주대표 이사회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OECD내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무국은 각 위원회(및 실무작업반과 전문가 그룹)와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토의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자문기관으로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가 있다. 이 기관들은 기업경영자 및 노동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1962년에 설립되었고, 두기관을 통하여 양자의 입장이 OECD의 활동에 반영되고 있다.

OECD의 주요 활동을 보면 1970년에 환경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3년 석유파동시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유무역을 위한 “무역서약”을 채택하였다. 1976년에 “다국적 기업의 행동지침”을 채택하였고, 1977년에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실업극복에 관한 보고서”를, 그리고 1979년에 “신흥공업국의 도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85년에 “보호주의의 공죄(功罪)에 관한 보고서”를, 1987년에는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관한 개념적 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89년에 “OECD 자유화 규약”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즉, 국제문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면서 OECD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OECD의 활동은 요약하면 첫째, 회원국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본질 규명 및 그 해결책과 함께,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며 둘째,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셋째,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연례회의 전에 협상의 전단계로서 회원국간의 의견 교환 및 필요시 공동해결책과 전략을 모색하고 넷째, 주요 사안인 경우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에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들을 공표·시행하는 일이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등 서

방 선진제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다.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및 자유화 의무 등 3가지로 나뉘어진다. 일반적 의무는 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설립 목적을 지지하고, OECD의 내부절차 등을 규정한 규범들을 준수하며, OECD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권고적 의무는 GATT 11조 및 IMF 8조를 수락할 것과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 11조는 수출입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 관한 조항이며, IMF 8조는 경상지불에 대한 외환 제한 철폐, 차별적인 통화조치의 철폐 및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 잔고의 교환성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권고하고 있다.

자유화 의무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으로 구성된 OECD 자유화 규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입당사국이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은 규약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며,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해야 하고 자유화된 이후에 재유보가 불가능한 항목(List A)과 자유화 이후 재유보가 가능한 항목(List B)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나, OECD는 자유화 의무의 확대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3. OECD/농업위원회의 주요 활동

OECD/농업위원회는 OECD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국간 농업정책에 대한 협의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설립되었으며, 농업문제 및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자문하고 보좌한다. 농업위원회의 역할은 회원국간 농업, 식량 및 수산정책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며, 회원국의 농수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하고, 생산, 유통 및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농수산물과 직접 관련된 무역문제는 무역위원회와 협조하여 검토하며, OECD의 다른 기관들이 농업분야의 경제, 무역 및 기술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협조하고,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수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 산하에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실무작업반,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 합동 실무작업반, 환경위원회/농업위원회 합동 실무작업반이 있다.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실무작업반은 각료급 회의에서 선언된 주요 원칙과 활동실적에 관하여 이행점검(Monitoring)을 하며, 농정개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수단에 관하여 검토하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기전망 등을 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 합동 실무작업반은 농산물의 수입제한과 수출보조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하며, 그 운영은 두 위원회중 한 위원회의 제안과 두 위원회의 의

장간 협의를 한 후에 업무가 부여되고 작업반의 보고는 두 위원회에 동시에 이루어지나 검토는 별도로 한다. 두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각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두 위원회의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위원회/농업위원회 합동 실무작업반은 농업과 환경정책의 조화 및 농업환경지표 등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그 운영형태는 무역위원회/농업위원회의 합동 실무작업반과 동일하다. 이외에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제도에 관한 전체회의, 종자인증제도 지정기관 대표자 연례회의, 산림재생산자원의 유통통제제도 적용에 관한 지정기관 대표자 회의, 농업용 트랙터 공인검사를 위한 표준 코드(code)에 관한 연례회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 및 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내에 식량·농업·수산물국이 있다.

농업위원회는 종자인증, 트랙터의 검사기준, 과채류 표준 등의 제정과 함께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관하여 조사·검토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이 경제, 사회정책 등과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농업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가소득보조정책, 가격지지정책, 수입제한 및 수출보조 등 농산물 무역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곡물, 사료 및 설탕, 육류 및 낙농제품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기전망도 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활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1980년에 들어와 농산물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재고량이 누증하는 등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미국과 EC간에 농산물 무역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ECD는 1982 ~ 87년 기간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이 농업보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업보조를 삭감할 경우 생산, 소비, 무역 및 가격 등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회원국이 농업보조를 축소하면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의 문제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를 감안하여 1987년 5월의 각료이사회는 농산물 공급과잉의 원인이 각국의 농업보조에 있다는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농업보조수준을 삭감하면서 농업부문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농업개혁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위원회는 농정개혁에 관한 사항, 즉 농업보조의 감축에 따른 효과 분석 및 회원국에 대한 이행점검(monitring)을 하고 있다. 농정개혁 점검의 주요 목적은 1987년 및 그 이후 각료급 선언에 나타난 농정개혁의 원칙과 행동지침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변경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Monitoring and Outlook"이라는 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시장지향적 정책, 과잉공급의 축소, 수급전망, 직접소득보조, 환경 및 지역개발 전략 등을 평가하며, 회원국의 농업보조수준을 PSE/CSE(Producer/Consumer Subsidy Equivalents)로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덜 왜곡되고 더욱 자유로운 무역체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농정개혁에 있어서 생산

감축, 생산자재의 양적 감축 등을 통한 공급 관리, 직접소득보조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정개혁이 농업고용 및 관련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식량·농업·수산국은 품목간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상품 예측모형(Aglink Model)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곡물의 중기전망과 관련하여 수행된 최근의 연구결과는 OECD 회원국의 생산잠재력이 기술향상과 생산자에 대한 보조정책 등으로 인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중기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능력은 곡물재고의 증가 및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유럽국가의 농업생산, 소비 및 무역관계에 대한 중기전망과 함께 농업정책 및 무역발전이 동·서 농업 및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소련농업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토양비옥도, 농업자재의 무역, 곡물무역 모형 등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체계의 차이로 인한 경제 및 환경적 특성, 생산자 및 소비자 등 각종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농체계에 관한 연구와 함께, 열대과채류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4. OECD/농업규범

OECD 규범은 OECD의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무역, 에너지,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회원국의 통계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규범의 형태는 결정(Decision), 권고(Recom-

mendation), 결의(Resolution) 등 다양하나, 대부분은 권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OECD 규범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나, 가입시 유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OECD 가입시 규범의 수락/유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락할 경우 수락에 따르는 기술적 제도적 후속조치를 위하여, OECD 규범의 검토는 중요하다.

OECD 규범중 농업관련 규범은 14개이며, 이 중 11개는 결정, 3개는 권고이다. 11개의 결정중 2개는 과채류의 국제표준 적용제도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일시적으로 적용면제를 허락하는 이사회 결정이다. 따라서 이 2개의 이사회 결정을 제외하면 검토해야 할 농업관련규범은 다음과 같은 12개이다.

〈결 정〉

- 1) 국제교역 곡류 종자의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2) 국제교역 옥수수 종자의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3) 국제교역 목초 및 유지 종자의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4) 국제교역 채소 종자의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5) 국제교역 사탕무 및 사료용 무우종자의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6) 국제교역 목초 크로바류의 종자 인증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7) 국제교역 산림재생산자원의 유통통제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8) 농업용 트랙터의 공인검사를 위한 표준 Code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 9) 과채류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적용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권 고〉

- 10) 과채류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적용제도하에서 신선과채류의 상표 및 증명에 관한 이사회 권고.
- 11) 과채류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적용제도하에서 신선·냉동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포장·규격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
- 12) 도시근교지역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

종자인증제도와 관련한 규범은 곡류 종자, 옥수수 종자, 목초 및 유지 종자, 채소 종자, 사탕무우 및 사료용 무우 종자, 목초 크로바류의 종자 등 6개이며, 그 내용은 각 작물의 특성상 포함해야 할 특별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종자인증제도의 목적은 국제간에 거래되는 종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지정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그 특성이 분명하고 재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품종에 한하여 목록화하고, OECD 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 정선, 포장과정에서 검사를 통하여 종자의 순도, 세대 및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즉, 참가국간의 고품질 종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제무역을 위해 생산·가공되는 품종에 대한 Label의 사용 및 보증을 확립하는데 있다.

산림재생산자원의 유통통제 제도는 채집, 운반, 가공, 육성, 분포되어 있는 종자, 식물체 부위 및 식물의 이름에 대한 진위성을 보증함으로써 이들의 이용과 생산을 장려하는데 있다. 농업용 트랙터의 공인검사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를 수입국이 신뢰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제거래를 간소화하고 최소한의 품질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채류의 국제표준규격 적용제도는 과채류의 발송단계에서의 품질요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제도하에서 신선/냉동 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표준규격제도는 표준화된 Pallet에 사용할 사각형 포장의 크기와 기계적인 특성과 관련되며 과채류의 발송 및 저장(냉동 및 장기저장 포함)에 사용될 포장에 적용하고 있다. 신선과채류의 상표 및 증명제도는 상표 및 인증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공통표준이 적용될 신선과채류의 탁송화물의 표시와 관련된다.

도시근교 지역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이사회 권고는 도시지역 확대 계획시 도시근교 농업을 충분히 고려하고, 도시근교 지역의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며, 도시근교 농업이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OECD 가입이 한국 농업에 주는 영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환경과 경쟁 및 투자문제 등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지역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변화에 효

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바,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OECD 가입이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 입장을 반영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을 증대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국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즉, OECD 가입으로 우리가 바로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을 단축시키는 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 가입이 내포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나,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업분야와 관련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가입의 영향은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가입에 따른 일반적 의무와 관련된 영향은 OECD 규범의 준수와 분담금의 부담이 있으나, 분담금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OECD 규범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나 유보도 가능하므로 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12개의 농업관련 규범중 농업용 트랙터 코드의 일부에는 1995년 12월 가입하였으므로, 11개의 규범에 대한 수락 또는 유보의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종자인증제도는 국제간 거래되는 종자를

보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곡류종자의 수출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목초 종자, 사탕무우 및 사료용 무 종자, 목초 크로바류의 종자는 국내생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의 실익이 없고, 채소종자의 경우 지정기관의 인증시 정부개입의 한계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종자인증제도의 가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림재생산자원 유통통제 제도도 종자인증제도와 유사하므로 가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간 거래되는 과채류에 적용되는 국제표준규격제도도 수출업무를 번거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과채류의 상표 및 증명표시 제도도 일부 품목에 있어서 품질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표 증명제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국제 수송을 위한 표준규격화 제도도 OECD 표준과 부합하는 Pallet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의 도입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OECD 규범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 이후에도 규범을 계속 검토하여 OECD의 선진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면서 국제거래에서 편익을 얻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GATT 11조(수출입 수량제한의 폐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권고적 의무와 OECD 회원국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결합되어 농산물 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OECD의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농산물시장의 조기개방에 대한 질문도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 시장의 조기개방은 어려우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에 개도국으로 임하였으므로 그 협상 결과를 이행할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고적 의무중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문제가 대두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강제성을 띠지 않는 권고적 성격이므로 우리의 경제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는 원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제시장에서 구매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이며, 일부 개도국들은 농업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경우 농업부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면서 농산물 개발 수입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화 의무와 관련하여 볼 때,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중 직접투자 부문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보통 작물생산업과 고기도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투자 자유화하기로 되어 있다. 농업부문에도 직접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과 가공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가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되어 온 점과 복잡한 국내유통 등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유입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논쟁은 향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의 과정을 통하여 농업부문에도 외국자본이 들어 올 수 있다 함은 농업부문도 투자할만한 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들어 올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국자본과 함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동시에 유입됨으로써 유통과 가공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따라서 농업 금융분야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표적인 농업금융기관인 농협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시장의 기반과 전문성이 취약하여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과 지도사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농업금융기관의 금융시장 기반과 전문성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취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쟁력까지 낮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도시에서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으나 농업금융기관의 기반은 중소도시와 농촌이며, 다른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농협의 주요 고객은 농민과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농업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시장의 중복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기관간(예, 은행간)에는 특성의 차이를 찾아 보기 어려우나 농협은 농협만의 특성이 있고,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해도 중소도시와 농촌에까지 진출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이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이로 인하여 나타날 금리하락 등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유입은 금리차이뿐만 아니라 환율과 물가수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절대금리 차이만 고려하면,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으나, 우리의 물가상승률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관계로 실질금리의 차이는 절대금리의 차이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자본의 유입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금리수준보다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에 따라 좌우되는 바,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예대마진이 축소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시점은 아니다. 물론, 금융과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위험가능성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농업금융에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해도, 패배감에 전염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재도약할 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첫째, 선진국의 농업정책 및 운용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수·분석하고 그 장점을 농정에 활용함으로써 농정운용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다자간 농업정책의 방향을 사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다자간 통상(및 무역)문제가 OECD내에서 토의시 우리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세계농업 현황 및 농산물 수급상황, 사

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인 소련, 동유럽 및 중국 등의 농업관련 자료 등 OECD의 각종 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수하여 우리의 식량정책 및 사회주의 농업과 관련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종자인증, 과채류의 표준화, 트랙터 코드 등과 관련된 OECD 제도의 운용경험을 입수하여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면서 수출농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그 첫째는 농업 및 무역정책에 관한 협의로 농업정책에 대한 자율성 제약과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다. 둘째, 농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농업부문의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상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새로운 다자간 농산물 협상이 대두될 때, OECD 회원국으로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은 추상적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매년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시장 및 무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연차보고서에는 회원국의 농업보조 수준도 매년 추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이행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농업정책의 수행상 자율성의 제약 즉,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통상

첫번째 지적되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볼 때, UR 농산물 협상은 이미 각국의 농업정책을 협상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의 측정과 관련하여서도 미국의 농무성은 이미 우리나라의 PSE/CSE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권고의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뿐이며, 권고가 있다해도 그 내용은 농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화하라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환경문제도 OECD내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중의 하나는 OECD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자간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의 상실에 대한 우려는 향후 대두될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유지해야만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도 OECD 활동에 있어서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나, 농업분야는 예외로 할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정의 체결시에 개도국으로 임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할 것임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리고 국제통상현안에 있어서도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OECD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회원국에게 인식시키고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통

상협상에서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협상그룹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판단위에서 개도국 지위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갖추는 작업도 중요한 일이다.

부정적인 의견들의 공통점은 농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정부도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입의 득실을 논하기 보다는 가입 이후의 대책에 중지를 모으는 일이다. 즉, OECD 가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OECD 가입 이후 대두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업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1997년말 또는 1998년초로 예상되는 회원국의 농업각료회의는 세계농업질서의 새로운 구축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987년의 OECD 각료이사회의 농업개혁에 관한 선언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주었듯이, 1997년말/1998년초로 예상되는 회원국의 농업각료회의도 차기 다자간 협상의 농업부문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OECD가 수행할 우리 농업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관련된 작업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갖게 될 중요한 의미는 OECD라는 신뢰도가 높은 국제기구가 우리의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하여 처음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으며,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업에 관한 교과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어려움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의 목적이 농업지지와 보호의 축소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OECD는 회원국의 농업지지 수준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즉, OECD 회원국의 주요 농산물의 Percentage PSE는 1986~88년 기간 중 45%에서 1995년에 4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의 농업지지수준을 더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지지의 유형도 시장가격지지에서부터 직접지불 등 예산이 뒤따르는 지원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OECD의 농정개혁 방향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농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그리고 농업지지정책도 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 등 예산이 뒷받침되는 지원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OECD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와 관련기관들의 OECD 관련조직을 확충하고, 이 업무에 전문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확보없이 OECD의 수많은 회의와 과제를 따라갈 수는 없다. 특히, OECD 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다른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과 농업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육성은 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제고되고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OECD에 가입하려는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6. 맺는말

21세기를 앞둔 세계 경제는 WTO의 출현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환경과 경쟁 및 투자문제 등이 새로운 다자간 협상 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국가 등이 시장경제로 이행 중에 있는 등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산업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히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OECD 가입론이다. 이에 정부는 1995년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OECD측과 다방면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며, 1996년 10월 OECD로부터 가입초청을 받았다.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인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선진경제권의 진입, 그리고 경제 운용의 자율화·국제화 등과 부합하는 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단축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OECD 가입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OECD 가입이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선진국의 농업정책과 그 운용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수·분석하고 그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농정운용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다자간 농업정책의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계 농업현황 및 농산물 수급상황 등 각종 정보와 종자인증, 과채류의 표준화, 트랙터 코드 등과 관련된 제도의 운용경험을 입수하여 농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OECD와의 농업정책(및 무역정책)에 관한 협의과정을 통하여 자율성을 제약받을 수 있으며,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과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즉, OECD는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시장 및 무역에 관한 점검을 하고, 회원국의 농업보조도 측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책변경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농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화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이미 각국의 농업정책을 협상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정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조화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환경 문제는 OECD내에서 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OECD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농업과 환경문제의 국제적 조류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도 OECD 활동에있어서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나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이후의 중심 과제는 농업위원회의 활동 즉, 농업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작업, 향후 추진할 작업 등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OECD는 수많은 회의로 운영되고 문서제조기라고 불리울 만큼 다량의 문서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러한 OECD의 운영방법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와 관련 기관들의 OECD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OECD 업무에 전념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OECD가 수행할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에 관한 국별검토보고서(Country Review)에 대한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OECD 가입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94. 「OECD 가입 준비자료」.
- 농림부. 1996. 「OECD 업무편람」.
- 외무부. 1994 「OECD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가입추진」.
- 박태호. 1996. 「우리나라의 OECD 가입추진 현황」,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주관 제2회 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 윤호섭. 1993 「OECD 가입과 한국농업」, 연구보고 R2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연. 1996. "OECD 가입에 따른 무역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정책세미나 자료.
- 한택환, 박 일천. 1996. "OECD 가입에 따른 환경정책과제," OECD 정책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1996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in OECD
Countri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1996".